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9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총무과]

제안 설명서

설 명 자: 총무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형제·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고,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 적용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 5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사망란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대상 경조사휴가 일수를 현행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14조제3항 장기재직휴가 부여 재직기간 기준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, 같은 항 제1호를 ‘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’로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재직기간 30년을 20년,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년 9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○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○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오니,

○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: 2024. 9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총무과장)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고,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 제공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(안 별표 5)
- 나. 장기재직휴가 대상 재직기간, 일수 확대(안 제14조제3항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4. 8. 12.~9. 2.) 결과: 의견 없음
- 라.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마.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바.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사.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아.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30년”을 “20년”으로, “10일”을 “30일”로, “5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1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 별표 5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“1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<u>10년</u>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,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 이내(단, 제1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0일 이내)</u></p> <p>3. <u>30년</u>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<u>10일</u> 이내(단, 제1호 및 제2호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<u>50일</u> 이내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[별표 5] 경조사 휴가일수표(제1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일 수</th> </tr> <tr> <td>사 망</td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<u>1</u></td> </tr> </table>	구 분	대 상	일 수	사 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1</u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<u>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 이내</u></p> <p>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3. <u>20년</u> ----- --- <u>30일</u> ----- ----- -- <u>60일</u> ----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5] 경조사 휴가일수표(제1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일 수</th> </tr> <tr> <td>사 망</td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td> <td><u>3</u></td> </tr> </table>	구 분	대 상	일 수	사 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3</u>
구 분	대 상	일 수											
사 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1</u>											
구 분	대 상	일 수											
사 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<u>3</u>											

【 관계 법령 】

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
[별표 1] 경조사 휴가일수표

구분	대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